

# 한국모태펀드 2019년 4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19년도 한국모태펀드 4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I. 개 요

### 1.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총 750억원 내외 (중진계정 600억원, 환경계정 150억원)	
투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li> <li>· 약정총액의 60%이상을 출자분야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단, 조합 성격 등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 투자비율을 적용</li> <li>· 자세한 내용은 3. 출자 분야 및 투자대상 참조</li> </ul>	
출 자 대 상	①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서 비상장 창업자(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②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중소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운용사 선정방법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 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 : 2019년 9월 6일(금), 14:00</li> <li>(본 공고부터 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li> </ul>	
조합 결성 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12월 31일(화)까지 결성</li> <li>(단,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li> </ul>	

##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단위 : 억원)

분 야	모태펀드 출자예정액	결성 목표액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신청가능 조합형태
LP지분유동화	100	250	40%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스케일업 <sup>주1)</sup>	500	1,250	40%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미세먼지해결 <sup>주2)</sup>	150	215	70%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합 계	750억원	1,715억원		

주1) 제안 및 선정된 펀드 당 결성목표액은 최소 1,000억원 이상이며,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음(1~2개 펀드 선정 예정)

주2) 선정우대기준에서 중점지원분야 항목에 해당

\* 스케일업 분야, 미세먼지 해결분야는 '19년 추경예산에 따른 출자사업

##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LP지분유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엔젤 또는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기발행한 주식 등의 인수 또는 벤처조합(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지분 매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벤처펀드의 유한책임 조합원 지분 매입에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하여야 함</li> </ul>
스케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li> <li>펀드 해산 시까지 펀드 전체 투자액에서 평균 투자금액이 기업 당 50억원 이상이어야 함</li> </ul>
미세먼지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세먼지에 대한 배출 저감, 발생관리, 대응, 취약계층 보호 관점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우수기술을 보유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벤처 기업*에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하되, M&amp;A**목적의 투자도 인정</li> <li>* 투자대상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집진·방진·측정 등 전통적인 대기분야 사업체</li> <li>②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17.9.26),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18.11.8) 등 정부대책 상의 세부대책 관련 기업</li> <li>③ 친환경자동차 부품, 필터 등과 같이 기존 제조업 등으로 분류되었으나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서비스업 및 핵심기술 개발 벤처</li> </ol> </li> <li>** M&amp;A 투자는 다음 ①~③ 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하며, 구주투자를 통한 M&amp;A는 약정총액 30%이내에서 가능</li> </ul>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단독 또는 전략적 투자자와 공동으로 ① 최대주주, ② 등기임원의 과반수 선임, ③ 대표이사 선임</p>

#### 4. 주요 출자조건

항 목	내 용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li> </ul>
자조합의 투자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합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li> <li>* ‘일정비율’ 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60%)</li> <li>○ 다만, 모태펀드에서 결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모태펀드에서 선정 시 결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li> </ul>
추가증액결성 (Multiple Closing) 출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LP지분유동화, 스케일업)</b>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펀드의 경우 추가 증액 결성방식으로 신청 가능</li> <li>* 출자분야 및 주목적 투자대상, 투자의무 비율 등은 공고문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함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은 40% 이내)</li> <li>- 조합원 전원 동의 총회의사록 등 관련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조합규약(안), 신규 조합원의 출자의향서 등)</li> <li>- 추가 증액 결성방식(Multiple Closing)은 동 출자사업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액 완료 되어야 함.</li> </ul>
출자금 납입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li> </ul>
자조합 존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속기간 5년 이상, 납입기간은 2년 이상으로 조합 존속기간 내에서 운용사가 자율제한</li> </ul>
관리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li> <li>○ 관리보수 지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성일로부터 3년 내 :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li> <li>-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 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li> <li>- 스케일업·LP지분유동화에 지원한 지역기반 운용사(수도권 이외 본점 소재)에는 구간별 계단식 요율 적용</li> </ul> </li> <li>*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li>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li> <li>-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li> </ul> </div> </li> <li>○ <b>(LP지분유동화, 스케일업)</b>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 하도록 운용사가 관리 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li> <li>*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sup>주)</sup> (관리보수율은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li> </ul>

항 목	내 용
기준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P지분유동화, 스케일업, 미세먼지해결 : 3% 이상</li> <li>※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단, 이 경우 콜옵션 미부여)</li> <li>※ 향후 출자사업에서 기준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음</li> </ul>
성과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li> <li>○ <b>(LP지분유동화, 스케일업)</b> 관리보수율을 일정 비율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비율을 상향 하도록 운용사가 관리 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li> <li>* 운용사 제안으로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 2%p 상향<sup>주)</sup> (관리보수율은 최대 0.5%p 하향조정 가능하며, 이 경우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li> </ul>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을 관리하여야 함</li> <li>○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 상품에 운용 가능</li> <li>○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li> </ul>
회계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 감사인을 선정</li> </ul>
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RP 사용 의무화</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li> <li>○ 모태펀드가 현저하게 적은 금액(출자비율 10%미만)을 출자하는 자조합 또는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 적용 가능</li> <li>○ 선정된 운용사는 출자자 간 협의를 통해 모태펀드 기준규약(신규약)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li> <li>○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li> </ul>

주) 적용 예시

상황	조정 전		조정 후		비고
	관리보수	성과보수	관리보수	성과보수	
총 3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예정인 A운용사가 관리보수율을 0.2%p 하향	2.5%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2.3%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4%	관리보수율 0.2%p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총 500억원 규모 펀드 결성예정인 B운용사가 관리보수율을 0.3%p 하향	2.3%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	2.0%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6%	관리보수율 0.3%p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 5. 인센티브

항 목	내 용												
추가 성과보수	<p>○ 운용사는 다음 추가 성과보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추가 성과보수는 상기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운용사가 수령할 추가 성과보수의 한계는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p> <p>- 스케일업 분야 적용</p> <p>① 다음에 해당하는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단 해당 투자가 주목적 투자대상에 해당되거나 관련법상 의무투자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p> <p>- (부여 대상) 신주보통주 방식 투자, 창업초기기업 투자, 지방기업 투자</p> <p>② 전체 회수금액 중 M&amp;A* 방식으로 회수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모태펀드는 추가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p> <table border="1" data-bbox="414 817 1268 967"> <thead> <tr> <th>회수 비율</th> <th>성과보수</th> </tr> </thead> <tbody> <tr> <td>20% 이상</td> <td>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5% 이내 지급 가능</td> </tr> <tr> <td>30% 이상</td> <td>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7% 이내 지급 가능</td> </tr> <tr> <td>50% 이상</td> <td>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10% 이내 지급 가능</td> </tr> </tbody> </table> <p>* 투자기업 인수자가 단독 또는 전략적 투자자와 공동으로 ① 최대 주주가 되었거나 ② 등기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했거나 ③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만 인정(단, 단독일 경우 전략적 투자자여야 하며, SPAC 등에 매각하는 경우 불인정)</p> <p>③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p> <p>- 미세먼지해결 분야 적용</p> <p>① 전체 투자 금액 대비 창업초기기업 투자금액의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에서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p> <p>②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창출을 한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별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p>	회수 비율	성과보수	2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5% 이내 지급 가능	3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7% 이내 지급 가능	5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10% 이내 지급 가능				
회수 비율	성과보수												
2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5% 이내 지급 가능												
3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7% 이내 지급 가능												
50% 이상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10% 이내 지급 가능												
한국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p>○ <b>(LP지분유동화, 스케일업)</b> 운용사는 모태펀드가 민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아래와 같이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을 부여하는 것을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p> <p>* 단,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 벤처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는 곳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모태펀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적용 가능)</p> <table border="1" data-bbox="422 1787 1380 2027"> <caption>&lt;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gt;</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2">적용조건</th> </tr> </thead> <tbody> <tr> <td>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td> <td>민간 유한책임조합원 약정액 10% 한도</td> <td>민간 유한책임조합원 약정액 20% 한도</td> </tr> <tr> <td>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td> <td>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td> <td>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td> </tr> <tr> <td>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td> <td colspan="2">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td> </tr> </tbody> </table>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민간 유한책임조합원 약정액 10% 한도	민간 유한책임조합원 약정액 20% 한도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민간 유한책임조합원 약정액 10% 한도	민간 유한책임조합원 약정액 20% 한도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항 목	내 용																
	<p>○ (미세먼지해결) 모태펀드와 협력하여 출자하거나 신규 민간 출자자(공제회,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운용사는 다음 표에서 그 출자자를 대상으로 우선손실충당과 우선수익배분 연동 ①~③ 조건 중 선택하여 제안할 수 있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lt;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gt;</th> </tr>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colspan="3" style="width: 85%;">적용조건</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 해당사항 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td> </tr> </tbody> </table> <p>* 우선손실충당 금액은 적용대상 출자자의 출자약정액을 기준으로 산정</p> <p>* 업무집행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과 특수관계인 유한책임조합원, 정책기관(정부, 지자체,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공적기금 등) 등은 제외하되, 모태펀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적용 가능</p>	<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①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 우선손실충당·우선수익배분 연동 >																	
구분	적용조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우선수익배분 적용 조건	①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출자자 약정액 10% 한도 IRR 7% 이상 수익 발생 시	③ 민간출자자 약정액 20% 한도 IRR 3% 이상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우선수익 배분액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액과 동일																

## 6. 기타 사항

- 분야별 중복 신청 가능
  -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 대상 조합 등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결성 이전에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 단, 조합의 대표 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하 "운용인력")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하며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

##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구 분	LP지분 유동화	스케일업	미세먼지 해결
주목적 분야 외 지방기업, 창업초기기업, 여성기업*, 신주보통주 투자를 약정총액의 30% 이상으로 제안하는 경우(단, 해당 투자가 주목적 투자 대상이거나 관련법상 의무투자인 경우 우대하지 않음)	○	○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및 지역 금융기관이 출자자로 참여하거나 지방 소재 운용사일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	○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 확정된 경우(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	○
약정총액의 10% 이상 외국자본 참여(서면으로 확인된 경우)	○	○	○
중점지원분야인 경우			○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보다 5% 이상 낮게 제안하는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차등우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수도권 이외 지역 금융기관 등 출자 참여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출자참여 규모에 따라 차등 우대)			○
각 출자 분야 주목적(예: 청년창업, 재기지원)의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투자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
투자금 1억원 당 2명 이상 고용을 창출, 모태펀드 자조합에서 성과보수 를 받은 경우			○
출자약정액의 30% 이상을 비상장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신주보통주 방식으로 투자하는 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
제안사가 신청 분야 주목적 투자대상에 10억원 이상 투자실적이 있거나 그러한 투자실적이 있는 인력을 보유한 경우			○

\* 여성이 최대주주이거나 여성이 당해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는 기업에만 한정

## 2. 선정배제·선정보류·선정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1) 선정 배제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사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설립 근거 법령 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말함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업무정지(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단, 1차 심의 종료일까지 시정명령 처분이 이행되었거나 업무정지가 종료되었음이 관계당국으로부터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상태인 경우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후 시정명령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3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기간에 걸쳐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업무정지(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2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제재가 확정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①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②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④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 \*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로 제안서 접수마감일의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가결산 포함) 기준으로 판정하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확인)한 재무제표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단, 직전 분기말 기준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가 있는 경우 해당 보고서 제출가능

나.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아래 <표>의 기간까지임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다.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라.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마. 신청사가 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용인력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단,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바.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운용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 사원은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

사.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는 소속 운용사의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 이어야 함

펀드 규모	최소 기준 인원
300억원 이하	2명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3명
800억원 초과	4명

※ 참여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은 별첨 참고

## (2) 선정 보류

-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3) 선정 취소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계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 라. 운용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 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단,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전문엔젤일 경우 제외)
-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운용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1차 심의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 3.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 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이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 업무집행조합원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운용인력은 결성 시한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 도래하는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사업의 운용인력 자격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 결성 시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 취소조건 중 가. 결성규모 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거부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본 제재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공고 조건에 따라 출자 제한 면제할 수 있음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모태조합 출자 제한 가능
- 선정 조합 중 외국 자본의 참여 의사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비율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1회 이상 출자 제한

### III.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분야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내용	비고
접수	'19. 8. 26.(월) 10:00부터 '19. 9. 6.(금) 14:00까지	제안서 접수 (온라인)	
선정	'19. 9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결성	'19. 12월	조합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금번 출자사업 접수부터 온라인 접수만 시행

### IV.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 지원 방법
  - 온라인 신청 매뉴얼(붙임3.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
  - \* 제안서 원본, 제안서 제본 3부, USB메모리를 우편, 퀵서비스 등으로 송부

<http://install.k-vic.co.kr>

- 출자 설명회
  - 일 시 : 2019. 8. 19.(월) 15:00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16 VR빌딩 지하1층 블루룸
  - ※ 설명회 참석 시 공고문 출력하여 지참 요망, 주차공간 미제공

## V.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VI. 문의 방법

- LP지분유동화·스케일업 분야 : 02-2156-2060, fof@k-vic.co.kr
- 미세먼지해결 분야 : 02-2156-2189, wc47@k-vic.co.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02-2156-2479, datacenter@k-vic.co.kr

2019. 8. 12.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 <별첨>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

[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 신청 자조합의 각 운용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leq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2,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참여(규약상 명시된 경우)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약정액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sum(\text{각 펀드규모} \div \text{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2,000\text{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leq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2,000억원